
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       | 제 628 호            |
| 의 결<br>연 월 일 | 2017년 월 일<br>(제 회) |

## 충청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

|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|
| 발의자   | 이광희 의원 등 7인  |
| 발의연월일 | 2017년 5월 31일 |

# 충청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

(이광희 의원 대표발의)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628 |
|----------|-----|

발의연월일 : 2017년 5 월 31 일

발 의 자 : 이광희, 김학철, 연철흠,  
박봉순, 박한범, 이언구,  
최병윤

## 1. 제정이유

-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범죄피해를 입은 도민의 인권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충청북도지사와 도민의 책무 규정 (안 제3, 4조)
- 나.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·시행 (안 제5조)
- 다. 관계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 규정 (안 제6조)
- 라.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 활동에 대한 도민 등 홍보, 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 (안 제7조)
- 마.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에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보조 규정 (안 제8조)

## 3. 일부개정조례안 : 붙임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
- 나. 신·구 조문 대비표 : 붙임
- 다. 입법예고 :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17-29호
- 라. 협의 : 행정국 자치행정과와 협의함.
- 마. 비용추계서 : 붙임

## 충청북도 조례 제 호

### 충청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에 따라 범죄 피해를 입은 도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범죄피해자”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(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),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.
  2. “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”이란 「범죄피해자보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2호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을 말한다.
  3. “범죄피해자 지원법인”이란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도 소재 법인을 말한다.
-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.

**제3조(도지사의 책무)**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**제4조(도민의 책무)** 충청북도민(이하 “도민”이라 한다)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도에서 실시하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보호·지원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**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의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 사업의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
  2.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,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
  3.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 사업 관련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
  4.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 사업을 위한 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
  5. 그 밖에 도지사가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6조(관계기관의 협조)** 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**제7조(홍보 및 교육)** ① 도지사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도민의 이해 증진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·보급 등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**제8조(재정지원 등)** ① 도지사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**제9조(비밀준수 의무)**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계법령 발췌

### □ 범죄피해자 보호법

제5조(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,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2.30.>  
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. <신설 2014.12.30.>

제9조(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 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제10조(교육·훈련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 증진과 효율적 보호·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범죄 수사에 종사하는 자, 범죄피해자에 관한 상담·의료 제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,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11조(홍보 및 조사연구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.  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, 지원 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3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) ① 법무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·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 실적을 매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시행계획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시행계획을 수립한 장에게 시행계획의 보완·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4조(관계 기관의 협조) ①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.

제33조(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 등) 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자산 및 인적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
②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「민법」과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을 적용한다.

4제34조(보조금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범죄

피해자 지원법인(이하 “등록법인”이라 한다)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법인에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 <개정 2014.12.30., 2016.12.2.>

제39조(비밀누설의 금지)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,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그 비밀을 사용하여야 한다.

## □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

제12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) ① 법무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매년 법 제13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 계획”이라 한다)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수립한 시행계획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매년 2월 말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.

# 충청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비용추계서

## 1. 사업 개요

-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통해 범죄피해를 입은 도민의 인권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## 2. 비용 발생 요인

-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보조금 지원

## 3. 관계 법령 및 관련 조문

-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 제34조(보조금)
- 가칭) 충청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제8조(재정지원 등)

## 4. 비용추계 결과

### 가. 추계의 전제:

-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보조금

나. 추계결과: '18년~'22년까지 총 150,000천원(연 30,000천원) 정도소요

다. 재원조달방안: 도비 100%

## 5. 연도별 비용추계서

(단위 : 천원)

| 구 분                  | 1차년도<br>(2018년) | 2차년도<br>(2019년) | 3차년도<br>(2020년) | 4차년도<br>(2021년) | 5차년도<br>(2022년) | 계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범죄피해자<br>지원법인<br>보조금 | 30,000          | 30,000          | 30,000          | 30,000          | 30,000          | 150,000 |

## 6. 작성자 : 행정국 자치행정과장 유건상